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77 발의연월일: 2025. 1. 16.

발 의 자: 민형배·주철현·소병훈

문정복 • 박지원 • 송옥주

이개호 · 정동영 · 김문수

이성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.

2021년 7월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산 정했습니다. 1년 반가량 지났지만, 여전히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습 니다.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달하는 곳도 존재합니다. 또한, 대규모 학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.

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 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습니다. 이는 교육의 질 하락을 유발합니다.

이에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.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.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

하고,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4조의 2 신설).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등) ① 국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급의 적정학생 수를 정하고, 기준을 초과한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24조의2(학교 및 학급의 적정
	학생 수 등) ① 국가는 학생의
	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
	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
	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
	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
	런하여야 한다.
	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
	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학
	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
	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
	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정
	하고, 기준을 초과한 학교 및
	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
	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
	<u>야 한다.</u>